

제405회 정례회

'22. 12. 6.(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1월 22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3일

3. 제안사유

-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치료에 필요한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용자(대출금 및 이자) 지원함으로써,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충북형 신개념 의료비 후불제'의 도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안 제5조)
- 지원내용 (안 제6조)
- 참여 의료기관 및 용자금 대출기관의 지정 (안 제7조~제8조)
-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안 제9조)
- 지원 중단 및 환수 (안 제12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북도 내 질병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환 중 충북도 지사와 참여 의료기관이 합의로 선정한 질병에 대해 의료비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¹⁾의 지출근거 규정에 따라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인 상기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는, 충북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임.
 - 시행계획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연차적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지원신청 대상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고,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제2조제2항에서 지원대상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용지지원 대상자 중에서 질병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도지사 별도 규정 마련 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지원대상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대출 보증 및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음.
 - 단, 지원 대상 질병의 범위를 조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용추계서에서는 대상수술을 6개 수술로 한정하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이고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욕구(needs)조사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의료비 용자지원과 관련한 지원신청, 채무 보증,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신청 방법에 있어 안 제10조제2항에,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는 지원 대상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채무보증을 실시토록 하였고,
 - 안 제1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목적 외 사용, 상환기간 위반 등 사유발생 시 상환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도 출자·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 의료비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용 상 타당하며,
- 조례안 예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²⁾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친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